

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◆ 성인지예산제도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? 집행하고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

* 관련법령 :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 2

- ◆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기타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
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
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

◆ 대상사업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구 분	대 상 사 업	비 고
필수	○ 여성정책추진사업	0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(' 13~ ' 17)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0 각 자치단체별 2015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
	○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0성별영향분석평가법(2012.3.16.시행)에 따른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0 그 밖에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, 분석 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권장	○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	0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,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

◆ 제외대상 :

-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 등
 -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 -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 -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

◆ 성인지 예산서 성격 :

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,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(예산서 부속서류)